경영유의사항 등 공시

1. 금융회사명 :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

2. 제재조치일 : 2020. 4. 1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경영유의사항 1건 ○ 개선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⑴ 계열사간 교류에 대한 관리·통제 유의

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은 계열사인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(이하 "제이피모간은행")이 구조화예금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제이피모간은행에게 단순히 고객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규모 및 가격 협의·조정 업무에 관여하였고, 계열사 채권영업담당자간 규제 환경 변화 등 관련 회의 개최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,

계열사간 회의·통신기록 점검시 각 현업부서 소속 직원 1명의 5일간('18년 이전에는 2일간)의 이메일 내역만 점검하고 계열사간 통신수단

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내메신저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등 계열사간 교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,

계열사와의 교류 과정에서 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영위가능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거나, 교류 가능하지 않은 정보 등을 계열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,

향후 회사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계열사 상품을 고객에 단순 소개하는 경우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, 이메일 점검범위 확대 및 사내메신저의 주기적 점검, 계열사간 회의기록 유지·점검 절차 개선 등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개선사항

⑴ 조사분석자료 대상종목에 대한 계열사 매매 모니터링 개선

준법감시부는 조사분석자료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일정기간동안 자기 및 계열회사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,

2016.1.1.~2019.5.31. 기간 중 계열회사 매매 내역 가운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가 발견되는 등 내부통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